

## 2020년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2020년 국가소방공무원(중앙119구조본부)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중앙소방학교장

### □ 선발예정인원 : 총 16명

가. 항공정비분야 (2~9 페이지, 22~59 페이지)

분 야	채용계급	인원	성별
항공정비	소방교	1	남

#### <시험순서>

①원서접수 → ②실기시험 → ③서류제출 → ④인성검사 → ⑤신체검사 → ⑥면접시험

나. 화학·구급·구조분야 (10~21 페이지, 22~59 페이지)

분 야	채용계급	인원	성별
화학	소방교	3	남
	소방사	6	
구급	소방사	3	
구조		3	

#### <시험순서>

①원서접수 → ②필기시험 → ③체력시험 → ④서류제출 → ⑤인성검사 → ⑥신체검사 → ⑦면접시험

# 항공정비분야

## I. 시험개요

### 1. 시험일정

구분	장소 공고일	시험 예정일	합격 발표일
① 원서접수		2. 14.(금) ~ 20.(목) → 취소기간 : 2. 14. ~ 24.	
② 실기시험 (구술평가)			4. 28.(화)
③ 서류제출	4. 10.(금)	4. 22.(수)	6. 16.(화)
④ 인성검사			
⑤ 신체검사	-	5. 6.(수) 한	
⑥ 면접시험	4. 28.(화)	5. 21.(목)	

※ 원서접수시스템 명칭 : 중앙소방학교 119고시(119gosi.kr) → 이하 “119고시”

※ 공고는 중앙소방학교(www.nfsa.go.kr) 또는 119고시 홈페이지에 게시,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다음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 【붙임 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나. 응시연령

구분	계 급	연 령	해당 생년월일								
항공정비	소방교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1997. 12. 31.								
<p>※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u>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li> <li>-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근무를 마친 사람</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복무기간</th> <th>1년 미만</th> <th>1년 이상 ~ 2년 미만</th> <th>2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연장기간</td> <td>1세</td> <td>2세</td> <td>3세</td> </tr> </tbody> </table>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다. 신체조건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붙임 2】
- 불합격 기준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2-2】

라. 거주지 제한 : 없음

마. 응시자격 및 제한사항

- 면허요건
  - 「도로교통법」 의거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기준일> 최초시험(필기) 예정일까지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면허증이 유효하여야 함.
- 제한사항 (응시불가)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이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지 않는 자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 「항공안전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舊 항공공장정비사 포함)

## II.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1.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기 간 : 2. 14.(금) 10:00 ~ 2. 20.(목) 18:00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취소기간 : 2. 14. 10:00 ~ 2. 24. 13:00

- 장 소 : 119고시(119gosi.kr)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접수

- 접수확인 :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증 확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진등록(3개월 이내 촬영)

- 사진파일(JPG) 규격은 반명함(3cm×4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 사진파일 확장자가 다른 경우 사진을 볼 수 없거나 인쇄되지 않음

- 응시자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일반 스냅사진,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2.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5,000원(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취소 기간 내 취소 시 납부 응시수수료(5,000원) 환불(별도의 추가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사실을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별도의 추가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 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 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가산특전

○ 가점입력

- 시기 : 원서접수 시 / 방법 : 가점관련 등록번호 입력
- 기준일 : 필기시험 전일

↳ **확인사항** : 원서접수 이후 가점을 취득한 자는 공고문 【XI.유의사항 2.원서접수】 참조

○ 가점적용 대상자 및 비율표 【붙임 3】

구 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b>1개만 적용</b>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4. 원서접수 결과 공개 및 응시자 가점 확인

구분	공개일시 및 방법
원서접수 결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3. 3.(화) 16:00</li> <li>○ 내용 : 채용분야 등</li> <li>○ 게시 : 중앙소방학교 · 119고시 홈페이지</li> </ul>
응시자 본인이 가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4. 6.(월) 14:00 ~ 4. 7.(화) 24:00</li> <li>○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li> <li>○ 방법 : 119고시 홈페이지 접속 확인 (로그인 → 성적조회)</li> </ul>

### Ⅲ. 실기시험, 인성검사, 서류제출

#### 1. 실기시험

- 일시 : 4. 22.(수) 10:00 ~ / 장소 : 별도공고(중앙소방학교 예정)
  - ↳ 시험시작 30분(09:30)전까지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 응시표 출력 : 4. 14.(화) 이후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정비사자격증, 필기도구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평가항목 : 구술평가(정비분야 기술역량, 관리역량, 임무역량)
- 합격자 공고
  - 일시 : 4. 28.(화) 14:00 / 중앙소방학교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합격기준 : 매 평가항목 40%이상, 전 평가항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합격인원 : 선발예정인원 3배수의 범위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 2. 인성검사

- 일 시 : 4. 22.(수) 실기시험 종료 후 실시
- 검사방법 : 소집검사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3. 서류제출

- 일 시 : 4. 22.(수) 18:00까지 인재채용팀으로 제출
- 제출서류
  - 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12】
  - ② 주민등록초본 1부 (정부24 발급가능) ※ 병적사항 포함할 것
  - ③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및 정부24 발급가능)
    - ↳ 운전면허경력 → 전체경력 선택 / 교통사고 · 법규위반 → 최근 5년 선택
  - ④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증 사본 1부
  - ⑤ 경력증명서 1부 【붙임 8-3】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⑦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 1부
  - ⑧ (계약직 경력인 경우) 근로계약서 1부
- 합격자 공고
  - 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시 / 중앙소방학교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붙임 8】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서류제출일 기준) 이내에 발행된 원본(자격증 사본 제외)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주(週)40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당 근무시간 명시), 직책, 담당업무, 상벌사항(징계기록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비정규직 근무경력 계산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보험건강공단)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계약직 경우)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미제출 시 경력인정하지 않음)
-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근무경력사실 확인서 【붙임 8-2】와 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IV. 신체검사

### 1. 신체검사

#### ○ 제출일자

제출일자	제출방법	제출대상
5. 6.(수) 18:00까지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5.6일자 소인분 인정)	실기시험 합격자

#### ○ 장 소 :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 【붙임 2-4】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반명함사진(3cm×4cm), 수수료

#### ○ 검사방법 : 지정 종합병원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따라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수수료 응시자 부담)

#### ○ 제출서식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붙임 2-3】

↳ 확인사항 : 일반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불인정

#### <신체검사 주의사항>

◇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 압인 또는 계인 처리

◇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 **2019. 5. 5. 이후 발행 신체검사서만 유효**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합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2.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 ○ 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시 / 중앙소방학교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 합격자 결정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붙임 2】

- 불합격 기준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2-2】



## V. 면접시험

### 1. 면접시험

- 일 시 : 5. 21.(목)
  - 응시표 출력 : 5. 13.(수) 이후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 장 소 : 별도공고
- 대 상 자 : 실기시험 합격자
- 면접방법 및 합격기준 : 【붙임 9】 참조
- 평가요소 등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VI. 최종합격자 발표

### 1. 최종합격자 공고

- 일 시 : 6. 16.(화) 14:00 / 중앙소방학교 또는 119고시 홈페이지
- 합격기준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실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동점자 결정은 총득점 기준)

### 2. 합격증명서 발급

- 신청기간 : 6. 16.(화) ~ 6. 19.(금)
- 발급대상 : 최종합격자 중 합격증명서 발급희망자

# 화학 · 구급 · 구조분야

## I. 시험개요

### 1. 시험일정

구분	장소 공고일	시험 예정일	합격 발표일
①원서접수		2. 14.(금) ~ 20.(목) → 취소기간 : 2. 14. ~ 24.	
②필기시험	3. 6.(금)	3. 28.(토)	4. 10.(금)
③체력시험			4. 28.(화)
④서류제출	4. 10.(금)	4. 23.(목)	6. 16.(화)
⑤인성검사			
⑥신체검사	-	5. 6.(수) 한	
⑦면접시험	4. 28.(화)	5. 21.(목)	

※ 원서접수시스템 명칭 : 중앙소방학교 119고시(119gosi.kr) → 이하 “119고시”

※ 공고는 중앙소방학교(www.nfsa.go.kr) 또는 119고시 홈페이지에 게시,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다음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 【붙임 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나. 응시연령

구분	계 급	연 령	해당 생년월일								
화학·구급·구조	소방교 / 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2000. 12. 31.								
<p>※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li> <li>-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근무를 마친 사람</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복무기간</th> <th>1년 미만</th> <th>1년 이상 ~ 2년 미만</th> <th>2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연장기간</td> <td>1세</td> <td>2세</td> <td>3세</td> </tr> </tbody> </table>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다. 신체조건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붙임 2】
- 불합격 기준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2-2】

라. 거주지 제한 : 없음

마. 응시자격 및 제한사항

- 면허요건
  - 「도로교통법」 의거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기준일> 최초시험(필기) 예정일까지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면허증이 유효하여야 함.
- 제한사항 (응시불가)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이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b>화학 (소방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li> <li>※ 유사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 8-4】&gt;로 인정(화학분야 전공과목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li> </ul>						
<b>화학 (소방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화학분야(연막, 제독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화학부대 : 국방부·육군·해군·공군·해병대 소속 화학지원대 또는 화학대대 </div>						
<b>구급 (소방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li> <li>-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영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li> <li>*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li> <li>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li> <li>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li> <li>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li> <li>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li> <li>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li> <li>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li> <li>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li> <li>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필요)</li> <li>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li> </ul> </div>						
<b>구조 (소방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15%; padding: 2px;">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td> <td style="padding: 2px;">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td> </tr> <tr> <td style="padding: 2px;">② 특수임무대 (국방부)</td> <td style="padding: 2px;">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수색대대</td> </tr> <tr> <td style="padding: 2px;">③ 기타 특수전부대</td> <td style="padding: 2px;">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lt;경력증명서 1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gt;와 &lt;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gt; 등 증명원 제출</td> </tr> </table>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수색대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수색대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b>&lt;기준일&gt;</b> ○ 학력·경력기간 산정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II.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1.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기 간 : 2. 14.(금) 10:00 ~ 2. 20.(목) 18:00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취소기간 : 2. 14. 10:00 ~ 2. 24. 13:00

- 장 소 : 119고시(119gosi.kr)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접수

- 접수확인 :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증 확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진등록(3개월 이내 촬영)

- 사진파일(JPG) 규격은 반명함(3cm×4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 사진파일 확장자가 다른 경우 사진을 볼 수 없거나 인쇄되지 않음

- 응시자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일반 스냅사진,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2.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5,000원(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취소 기간 내 취소 시 납부 응시수수료(5,000원) 환불(별도의 추가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사실을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별도의 추가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 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 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가산특전

○ 가점입력

- 시기 : 원서접수 시 / 방법 : 가점관련 등록번호 입력
- 기준일 : 필기시험 전일
- ↳ 확인사항 : 원서접수 이후 가점을 취득한 자는 공고문 【X.유의사항 2.원서접수】 참조

○ 가점적용 대상자 및 비율표 【붙임 3】

구 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b>1개만 적용</b>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4. 원서접수 결과 공개 및 응시자 가점 확인

구분	공개일시 및 방법
원서접수 결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3. 3.(화) 16:00</li> <li>○ 내용 : 채용분야 등</li> <li>○ 게시 : 중앙소방학교 · 119고시 홈페이지</li> </ul>
응시자 본인이 가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4. 6.(월) 14:00 ~ 4. 7.(화) 24:00</li> <li>○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li> <li>○ 방법 : 119고시 홈페이지 접속 확인 (로그인 → 성적조회)</li> </ul>

### Ⅲ. 필기시험

#### 1. 필기시험

○ 일 시 : 3. 28.(토) 10:00 ~ 11:00 / 총 60분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09:30)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 응시표 출력 : 3. 18.(수) 이후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장 소 : 별도공고

○ 시험과목 : 3과목

채용분야	시험과목
▶ 화학 (소방교)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화학 · 구급 · 구조 (소방사)	국어, 생활영어 <sup>1)</sup> , 소방학개론 <sup>2)</sup>
<출제범위> 1) 생활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2) 소방학개론 : 【붙임 4】	

○ 배 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

#### 2. 출제문제 이의제기 등

○ 가(정)답안 공개 : 3. 28.(토) 16:00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신청기간 : 3. 28.(토) 16:00 ~ 3. 29.(일) 24:00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방법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이의제기서 첨부 【붙임 5】\*

↳ 【붙임 5】 이의제기서 :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내용 : 출제문제 관련(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 3. 필기시험 점수 등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 기 간 : 4. 6.(월) 14:00 ~ 4. 7.(화) 18:00

- 공개방법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로그인 → 성적조회)

- 공개 및 이의제기 내용 : 응시자 본인 필기시험 점수 및 가점

○ 신청절차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점수 문의 → 점수 이의제기\*

<p>* 점수 이의제기 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응시번호</li><li>2. 응시자 성명</li><li>3. 사전공개점수(A과목 80, B과목 60, C과목 70)</li><li>4. 본인채점점수(A과목 85, B과목 65, C과목 75)</li></ol>
---------------------	---

○ 답변방법 : 4. 8.(수)한 / 119고시 홈페이지 답글

### 4.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 일시 : 4. 10.(금) 14:00 / 중앙소방학교 · 119고시 홈페이지

○ 내용 : 필기시험 합격자, 체력시험 · 인성검사 장소공고

○ 합격기준 : 매 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합격인원 : 선발예정인원 3배수의 범위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 IV. 체력시험

### 4. 23.(목) 일정 : 체력시험 → 인성검사 → 서류제출

#### 1. 체력시험

- 일자 : 4. 23.(목) / 장소 : 별도공고
  - 응시표 출력 : 4. 16.(목) 이후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운동화, 운동복, 물
- 시험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개 종목 **【붙임 6】**
  -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방법 : **【붙임 6-2】**
- 시험관정 : 대한육상연맹 추천 관정관
- 장비점검 : 전문기관 의뢰 점검 및 교정
- 이의제기 운영 : 시험관리위원회(관정관 전원참여) 개최 후 결과 통보

#### 2. 도핑테스트 시료채취

- 일시 : 체력시험 종료 후 / 장소 : 별도 운영
- 대상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이내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 동의서 징구 :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 도핑테스트 안내문 : **【붙임 7】**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 7-2】**
  - 응시자 치료목적 사용 면책신청서 : **【붙임 7-3】**
    - ↳ 이의제기 시 : 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3인 이상) 구성 및 운영

#### 3.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 일시 : 4. 28.(화) 14:00 / 중앙소방학교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합격기준
  - 6개 종목 평가점수 합산, 총점(60점)의 50퍼센트(30점)이상 득점한 사람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 나온 경우 → 불합격(부정행위처분)

## V . 서류제출

### 1. 서류제출

#### ○ 제출일자

제출일자	제출방법	제출대상
4. 23.(목) 18:00까지	당일 직접제출	필기시험 합격자

#### ○ 제출서류(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구분	개별서류	공통서류
화학 (소방교)	① 학위(취득예정)증명서(석사이상) ※ 필요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붙임 8-4】	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12】  ②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 본인 주민번호 전부 공개  ③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경력→전체경력 선택 ↳ 교통사고·법규위반→최근 5년 선택
화학 (소방사)	① 군(軍) 경력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병무청 발급)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 입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구급	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사본) ② 경력증명서【붙임 8-3】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⑤ 근로계약서(계약직 경우)	
구조	① 군(軍) 경력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병무청 발급)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 입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자)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붙임 8】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서류제출일 기준) 이내에 발행된 원본(자격증 사본 가능)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주(週)40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당 근무시간 명시), 직책, 담당업무, 상벌사항(징계기록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비정규직 근무경력 계산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보험건강공단)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계약직 경우)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미제출 시 경력인정하지 않음)
-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근무경력사실 확인서 【붙임 8-2】와 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2. 서류제출 합격자 공고

- 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시 / 중앙소방학교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Ⅵ. 인성검사

### 1. 인성검사

- 검사일시 : 4. 23.(목) → 체력시험 이후 실시
- 장 소 : 별도공고(중앙소방학교 예정)
- 대 상 자 : 체력시험 합격자
- 검사방법 : 소집검사(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VII. 신체검사

### 1. 신체검사

#### ○ 제출일자

제출일자	제출방법	제출대상
5. 6.(수) 18:00까지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5.6일자 소인분 인정)	체력시험 합격자

#### ○ 장 소 :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 【붙임 2-4】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반명함사진(3cm×4cm), 수수료

#### ○ 검사방법 : 지정 종합병원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따라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수수료 응시자 부담)

#### ○ 제출서식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붙임 2-3】

↳ 확인사항 : 일반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불인정

#### <신체검사 주의사항>

◇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 압인 또는 계인 처리**

◇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 **2019. 5. 5. 이후 발행 신체검사서만 유효**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2.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 ○ 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시 / 중앙소방학교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 합격자 결정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붙임 2】

- 불합격 기준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2-2】

## VIII. 면접시험

### 1. 면접시험

- 일 시 : 5. 21.(목)
  - 응시표 출력 : 5. 13.(수) 이후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 장 소 : 별도 공고
- 대 상 자 : 체력시험 합격자
- 면접방법 및 합격기준 : 【붙임 9】 참조
- 평가요소 등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IX. 최종합격자 발표

### 1. 최종합격자 공고

- 일 시 : 6. 16.(화) 14:00 / 중앙소방학교 또는 119고시 홈페이지
- 합격기준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동점자 결정은 총득점 기준)

### 2. 합격증명서 발급

- 신청기간 : 6. 16.(화) ~ 6. 19(금)
- 발급대상 : 최종합격자 중 합격증명서 발급희망자

## X. 유의사항

### 1. 공통사항

○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인 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

※ 각 시험 응시표 출력 후 → 모든 시험절차 지참

- 응시자는 모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시험 실시 건물)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시험장의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 전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시행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모든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안내문 【붙임 11】

## 2. 원서접수

### ○ 가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신청하고 **【붙임 3】**

-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아래의 가점을 취득한 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지정을 받은 응시자

**※ 제출처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인재채용팀 가점 담당자 앞**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 동물·식물·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팩스 제출 불가)

- 응시 결격자는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가 불가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표 출력 후 응시표에 기록되어 있는 응시분야가 원서접수 시 선택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필기시험

#### ○ 필기시험의 특징은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됩니다.

-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채점이 불가하거나 중복인식 등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능한 경우
  -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이 흐리게 표기한 경우
  -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한 경우
  -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 등 예비표기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모자, 마스크를 휴대하거나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시험 중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만으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착용여부는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전산기기 등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 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험운영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필기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 4. 체력시험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시험시행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신발, 장갑이나 손 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 등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시행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장구(기구)는 사용가능 합니다.
-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 시험 세부 운영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악력,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 시험운영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 촬영을 실시하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신체검사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후 채용시험 지원 가능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사진 등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검사당일 해당병원에서 접수를 마친 후 신체검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6.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7. 기타사항

- 문자안내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필기, 체력, 면접 등)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연락처 : 041-840-6900
- 주 소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 우편번호: 32522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에스이(SE)코리아
- 연락처 : 053-474-1212

- 붙임
1. 응시결격 사유 등 1부.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 2-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 2-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2-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1부.
  3.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부.
  4. 소방학개론의 범위 1부.
  5. 필기시험 문제 이의제기서 1부.
  6.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 6-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7.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
    - 7-2.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 7-3.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
  8.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경력분야) 1부.
    - 8-2.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1부.
    - 8-3. 경력증명서 1부.
    - 8-4.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9.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 1부.
  10.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11.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끝.
  1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등록의무자 :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2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2-2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구분	내용
1. 일반 결합	<p>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p> <p>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p> <p>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쫂마병·일본주혈흡충병)</p> <p>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p>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p>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p> <p>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p>
3. 치아 계통	<p>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장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p> <p>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p> <p>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p> <p>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p>
4. 흉부	<p>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p> <p>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p> <p>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p>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p>가. 심부전증</p> <p>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p> <p>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p> <p>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p> <p>마. 유착성 심낭염</p> <p>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p> <p>사. 폐성심</p>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p>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p> <p>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p> <p>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p>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u>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u>
13. 눈	가. <u>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u>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2-3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지 1)

(앞쪽)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	------	----	------

### 검 사 내 용

신장	cm	체중	kg
시력	맨눈 좌: 우: 교정 좌: 우:	색신 (색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치아		호흡기질환	
간질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검사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결과	[ ] 합격	불합격 또는
합격여부	[ ] 불합격	합격 사유
판정보류	[ ] 판정보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 297mm [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2-4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연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155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전문건설회관 15층	1577-0075
3	국립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365
4	구포성심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86 (구포동)	051-330-3996
5	대동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 (명륜동)	051-550-9300
6	동래봉생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109번길 27 (안락동)	051-520-5537
7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051-240-5310
8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179
9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10	부산성모병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용호동)	051-933-7672
11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051-419-7757
12	광혜의료재단 광혜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96 (온천동)	051-590-3384
13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10-9865
14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덕천동)	051-330-3026
15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우동)	051-602-8137
16	정화의료재단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051-664-4054
17	한호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 (좌천동)	051-630-0421
18	학교법인 춘해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범천동)	051-608-0271
19	학교법인 동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051-850-8763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21	해동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봉래동3가)	051-410-6700
22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 2가)	053-200-5791
2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053-258-4171
2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	053-650-3434
25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중리동)	053-560-7387
26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신암동)	053-940-7025
27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	053-620-3180
28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33~4
29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2-6114
30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6~7
31	대청병원	대전광역시 서부 계백로 1322 (정림동)	042-589-6553~4
32	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052-241-1114
33	중앙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80번길 10 (신정동)	052-226-1100
34	아주대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2118
35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36	의정부백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2	031-843-8383
37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38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033-258-2313
39	삼척의료원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 (남양동)	033-570-7418
40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일산동)	033-741-1670
41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043-279-0114
42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삼룡동)	041-570-7200

연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43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시 무녕로 77 (웅진동)	041-962-1111
4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시 증양로 149 (석림동)	041-689-7000
45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14
46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5
47	예수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	063-230-1515
48	대자인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063-250-8770
49	익산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969 (신동)	063-840-9120
50	동군산병원	전라북도 군산시 초촌로 149 (초촌동)	063-440-0370
51	정읍아산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용계동)	063-530-6140
52	남원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063-620-1152
53	목포시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500
54	나주종합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061-330-6114
55	성가롤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000
56	여천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061-690-6000
57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000
58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114
59	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75-0005
60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32-8901
61	의료법인 거봉 백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14 (상동동)	055-733-0000
62	대우의료재단대우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두모길 16 (두모동)	055-680-8114
63	성남의료재단맑은샘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055-731-1240
64	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055-310-6000
65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055-330-6000
66	강일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59 (구산동, 강일병원)	055-822-0100
67	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055-330-0300
68	베데스다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28 (신기동)	055-384-9901
69	웅상중앙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로 59 (명동)	1600-7582
7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000
71	제일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5 (강남동)	055-750-7123
72	진주고려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 (칠암동, 진주고려병원)	055-751-2500
73	한일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충무공동)	055-759-7777
74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	055-750-8000
75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52
76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055-214-2050
77	한마음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21	055-268-7898
78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055-233-6012
79	에스엠지연세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055-240-7542
80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241
81	연세에스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055-548-7794
82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359
83	중앙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2
84	한마음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	064-750-9000
85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3길 15	064-717-1580
86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064-730-3000
87	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064-750-0701

##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 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가점점수 및 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 각 과목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 ◆ 각 과목별 만점의 5%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3호, 제5호

- 적용범위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 산정 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4조,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 포함)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국가보훈처, 민원24)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가점 불인정)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 2. 의사상자

- 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 한함
- 가점점수 및 대상자 : 만점의 3% 또는 5%

- ◆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는 대상자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대상자
  -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적용범위 :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 산정 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 044-202-3258)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 3.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 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점 표기 없음)
- 가점 잘못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고

## 소방학개론의 범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의 발전 과정</li> <li>-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li> <li>-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li> <li>-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li> <li>-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li> </ul>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li> <li>-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li> <li>- 위험물 안전관리</li> <li>-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li> <li>-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li> </ul>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의 특징과 유형</li> <li>-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li> </ul>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li> <li>- 긴급구조</li> <li>-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li> </ul>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li> <li>- 연소의 조건 및 형태</li> <li>- 발화의 조건 및 과정</li> </ul>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의 정의</li> <li>- 연소 가스</li> <li>-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li> <li>-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li> </ul>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발의 조건</li> <li>-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li> <li>-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li> <li>- 폭연과 폭굉</li> <li>- 가스·분진·분해 폭발</li> <li>-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li> </ul>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5

##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이의제기	(성명)	(응시번호)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응시분야	• 응시시도 : 국가직 • 응시분야 : 경력경쟁채용시험	
질의과목	• 해당과목 : • 문항번호 : A형 - 00번, B형 - 00번	
<p>&lt;출제문제&gt;</p>          <p>&lt;사유 및 관련근거&gt; -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p>          <p>&lt;응시자 의견&gt;</p>		

## 6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약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6-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4)

종 목	측정방법 등
<p>악 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li> <li>○ 측정 단위 : kg</li> <li>○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p>배 근 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배근력계</li> <li>○ 측정 단위 : kg</li> <li>○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 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p>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li> <li>○ 측정 단위 : cm</li> <li>○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li> <li>-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li> <li>-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친다.</li> <li>-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li> <li>-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li> <li>-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li> <li>※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혔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li> </ul>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li> <li>○ 측정 기록 : cm</li> <li>○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li> <li>○ 측정 기록 : 회</li> <li>○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li> </ul>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li> <li>-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li> <li>-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li> <li>- 녹음 CD : 별도</li> </ul> </li> <li>○ 측정 기록 : 단위(회)</li> <li>○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li> <li>-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li> <li>-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li> <li>-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li> <li>-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li> <li>-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li> <li>-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li> </ul> </li> </ul>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http://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http://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http://www.kimsonline.co.kr)

## □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sup>1)</sup>

##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 $\beta$ -hydroxy-2 $\alpha$ ,17 $\alpha$ -dimethyl-5 $\alpha$ -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 $\beta$ -hydroxy-5 $\alpha$ -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4. 마약류 : 총 11종

- |                 |                 |                      |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                      |

#### □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남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 2. 의료정보

##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



---



---

##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



---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응급   
기간(주/월) \_\_\_\_\_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제출등) 제3항 제5호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무경력을 의미하고, 유야휴직·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http://www.iros.go.kr)) / 법인등기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8-2**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 무 경 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주)○○병원	2017	주 입	95.05.01. ~ 97.12.01. ( 2 년 8 월)	응급구조사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임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기관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 형태
				(예시)	2010.12.25. ~2012.12.22.	상근
				(예시)	2013.01.01. ~2013.12.31.	비상근 주 20시간
				(예시)	2014.01.01. ~2014.12.05.	시간제 주 10시간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연락처			
서 명			

년 월 일

\_\_\_\_\_ 사 (직인)

해당시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4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0년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 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 ○ (전화 : - )

2020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 I. 평가요소 등

○ 면접시험의 평가 요소 및 각 요소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인성 또는 적성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II.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sup>0</sup>,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들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들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 1. 접수자 인적사항

시험명		응시계급	
성명		응시번호	
전화번호	☎ :	휴대폰	:

## 2. 정정신청 내용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 3. 정정사유

## 4. 첨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록(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 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 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020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li> <li>-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등</li> </ul>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느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국세청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 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 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자격증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b>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b>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